

컨테이너 상차작업 중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

재해 개요

'18. ○○. ○○. □□시 00시 소재 00통상 창고동 지상에 주차된 컨테이너에 지게차를 운행하여 구체의류를 적재하고 후진 중 도크 아래 작업장 바닥 경계면 콘크리트가 파손되어, 지게차가 균형을 잃고 작업장 옆 논밭으로 넘어져 재해자가 깔려 사망한 사고임

재해 관련 사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전도 등의 방지조치 미 실시
 - 재해 발생 장소가 경계석이 파손되는 등 해당 바닥면이 붕괴 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전도 등의 방지조치 없이 지게차 작업을 실시
- 좌석 안전띠 착용 등 미 실시
 -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 지게차 전복 시 깔림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하나 미착용한 상태로 운행
- 무자격자 지게차 운행
 - 3톤 미만 디젤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미이수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전도 등의 방지조치 실시(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1조)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,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
 - ※ 유도자 배치(제171조) 및 작업계획서 작성(제38조)
- 좌석 안전띠 착용(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3조)
 -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하며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함
- 소형 건설기계 자격증 등 관련 자격 취득 후 작업 실시(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)
 - 3톤 미만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정 교육기관에서 12시간 교육을 이수 후 관할 지역(시,구청)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한 자격자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(1종 보통운전면허,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)
 - ※ 단 전동식 슬리드 타이어(속에 공기가 들어있지 않는 단단한 고무만으로 된 타이어)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

